# 2019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성민	860301-*****

#### 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의뱀	월별 보수월액(고지금액)		소득월액(	납부금액)
결글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108,170	9,200	0	0
02월	108,170	9,200	0	0
03월	108,170	9,200	0	0
04월	139,970	11,910	0	0
05월	139,970	11,910	0	0
06월	139,970	11,910	0	0
07월	139,970	11,910	0	0
08월	139,970	11,910	0	0
09월	139,970	11,910	0	0
10월	139,970	11,910	0	0
11월	139,970	11,910	0	0
12월	139,970	11,910	0	0
연말정산	386,040	28,410		
합계	1,970,280	163,200	0	0
총합계				2,133,48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성민	860301-*****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148,630	0
02월	148,630	0
03월	148,630	0
04월	148,630	0
05월	148,630	0
06월	148,630	0
07월	192,330	0
08월	192,330	0
09월	192,330	0
10월	192,330	0
11월	192,330	0
12월	192,33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험	험료 납부금액	0
실업크레딧 납부금액		0
합계	2,045,760	0
	총합계	2,045,760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 (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성민	860301-*****

#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	류			
종류	사업자반	사업자번호		증권번호	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	수익자)	
	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		(무) 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1904				
보장성	116-81-03	3***	61264359	967	860301-****	조성민	94,240
	메리츠화재해상보	험주식회사	(무) 메리츠 운전자!	보험 M-Drive			
보장성	116-81-03	3***	6131553	81	860301-****	조성민	148,940
	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		(무) 알파Plus보장보험1904				
보장성	116-81-03***		61240189	982	860301-****	조성민	360,190
	에이비엘생명보험(주)		무)소중()한통합종	등신보험(저			
보장성	214-81-04***		21892202		860301-****	조성민	293,950
	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		무배당 삼성화재통합보험모두모				
보장성	202-81-45	5***	51703591340000		860301-*****	조성민	71,431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성민	860301-*****

#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-	류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	수익자)	
	삼성화재해상보험 ( 주 )		무배당 삼성화재통	합보험모두모			
보장성	202-81-45	5***	5170359132	20000	860301-****	조성민	44,000
	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		무배당 삼성화재통합보험모두모				
보장성	202-81-45	5***	51703591330000		860301-****	조성민	218,820
	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	프로미카개인용				
보장성	201-81-45***		220193052761000		860301-****	조성민	764,220
	인별합계금액						1,995,791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성민	86030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5-18-00***	<b>뉴****</b>	일반	7,450
**3-92-00***	<u>*</u> *****	일반	143,3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50,75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50,75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조성민	860301-*****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11,072,009	100,800	382,900	0	11,555,709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일반	10,919,309
신용카드	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100,800
신용카드	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382,900
신용카드	101-86-61***	( 주 ) KB국민카드	일반	152,700
인별합계금액				11,555,709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00204-4598679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6-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조성민	860301-*****		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1,763,050	0	0	0	1,763,050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101-86-61***	( 주 ) KB국민카드	일반	1,715,550
직불카드 등	201-81-68***	( 주 ) 국민은행	일반	47,500
인별합계금액				1,763,05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는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조성민	860301-*****		

#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1,140,806	0	0	0	1,140,806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종류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	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에
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_ 일반거래 _	79,680	248,676	129,000	54,500	
		22,000	28,150	70,450	20,450	1,140,806
		36,450	82,650	135,450	233,35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일련번호: 20200204-4598679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8-